

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5의3] <신설 2023. 6. 14.>

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·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
(제75조의2제2항 전단 관련)

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	입증서류
1. 법 제88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	가.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: 등기사항증명서, 등기필정보,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세대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.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: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세대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. 매매계약자 본인: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. 임대차계약자 본인: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2. 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	가. 소유자 본인: 등기사항증명서, 등기필정보,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. 임차인 본인: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. 매매계약자 본인: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. 임대차계약자 본인: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3.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	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4.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	신용조사의뢰서,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
5.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	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
6.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	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

비고

입증서류는 사본을 포함하되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 한다.